

---

# 202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2022. 06.

# 1.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 목적	- 기념사업회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
대상 범위	- <b>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b> :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 <b>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b> :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함
평가 방법	- 담당부서 자체평가(1차) : 지표별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 - 전문가 평가(2차) : 증빙자료 적절성 검토 및 인터뷰 실시
평가 기간	- 2022년 6월

## 2) 평가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계획 수립	- 대내외 인권 관련 이슈 및 동향 분석 - 기념사업회 인권경영 실행체계 진단 -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 인권영향평가 대상, 일정, 방법 등 실시 계획 수립
[2단계] 지표 설계	- 기관운영 평가지표 고도화 - 주요사업 평가지표 개발 - 인권경영위원회 지표 심의·확정
[3단계] 평가 교육	- 지표별 담당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실무교육 실시
[4단계] 평가 실시	-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체크리스트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 - 전문가 평가(증빙자료 적절성 검토 및 인터뷰 실시)
[5단계] 결과 분석	- 평가 결과 종합 분석 - 분야별·사업별 인권리스크 도출 -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8.)」 기반으로 실시

## 2.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지표 총계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4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성과	3
	[5] 구제절차 마련	6
② 고용상의 비차별	[6] 고용상 비차별	5
	[7] 고용상 남녀비차별	6
	[8]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3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1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
	[11]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④ 강제 노동의 금지	[12] 강제노동 금지	5
	[13] 협력업체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⑤ 아동노동의 금지	[14] 연소자 고용 금지	2
⑥ 산업안전 보장	[15] 근무지 안전	4
	[16]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17]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4
	[18]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2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9] 협력업체 등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2
	[20] 모니터링 실시	2
	[2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2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
	[23]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⑨ 환경권 보장	[24] 환경보호 노력	3
	[25] 비상계획 수립	5
⑩ 고객인권 보호	[26]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	4
	[27] 고객정보 보호	6
<b>합계</b>		<b>101</b>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지표 총계
① 교육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1] 교육 프로그램·포럼 계획	1
	[2] 교육 프로그램·포럼 신청	5
	[3] 교육 프로그램·포럼 참여자 정보 보호	3
	[4] 교육 프로그램·포럼 운영	3
	[5] 고충처리제도	2
②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외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6] 외부 협력업체 직원 인권 보호	3
	[7] 외래강사 인권 보호	4
	[8] 고충처리제도	2
③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내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9] 원활한 업무수행	2
	[10] 고충처리제도	2
<b>합계</b>		<b>27</b>

###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이행률 91.1점<sup>1)</sup>)

(단위 : 개)

평가분야	총계	점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3	20	2	1		
② 고용상의 비차별	14	14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3	13				
④ 강제 노동의 금지	7	5	2			
⑤ 아동노동의 금지	2	2				
⑥ 산업안전 보장	14	14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	2		4		
⑧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4	4				
⑨ 환경권 보장	8	8				
⑩ 고객 인권 보호	10	10				
<b>합계</b>	<b>101</b>	<b>92</b>	<b>4</b>	<b>5</b>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이행률 77.8점)

(단위 : 개)

평가분야	총계	점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① 교육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14	11	2	1		
②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외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9	7	1	1		
③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내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4	3	1			
<b>합계</b>	<b>27</b>	<b>21</b>	<b>4</b>	<b>2</b>		

1) 인권영향평가 이행률 점수는 ‘긍정응답지표/전체지표×100’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3) 인권리스크 도출

분야		인권리스크 평가지표	점검결과
기관운영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보완필요
		·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아니요
		· 피해자가 사업회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보완필요
	④ 강제 노동의 금지	· 사업회는 협력업체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보완필요
		· 사업회는 협력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보완필요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사업회는 협력업체와 계약 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인권보호·존중에 동참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아니요
		· 사업회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권 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니요
· 사업회는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한다.		아니요	
· 사업회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아니요	
주요사업	① 교육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 사업회는 교육 프로그램 및 포럼 참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완필요
		· 사업회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 및 포럼을 운영할 시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점검한다.	보완필요
		· 사업회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교육 참여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침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안내하고 있다.	아니요
	②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외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래강사 강의내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보완필요
		·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외부 담당자에게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니요
	③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내부 담당자의 인권 보호	·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내부 담당자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완필요

## 4. 인권영향평가 결과 대응계획 수립

### 1) 인권영향평가 종합 분석의견

- 2022년 기념사업회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2년 기념사업회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는 88.3점임(총 128개 지표 중 긍정지표 113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10개 분야 중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 보호 등 7개 분야에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강제 노동의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등 3개 분야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1개 지표 중 9개의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보완과 협력업체 인권경영 지원 등이 나타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제도 보완은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27개 지표 중 6개의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신고·상담 고충처리제도 안내 활성화, 교육장소 점검 및 외래강사 강의내용 점검에 관한 제도화,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노력 등이 나타남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정책 운영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보완필요’ 및 ‘아니요’로 평가된 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예’로 평가된 지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과 실천적 노력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수준 높은 인권보호·존중 의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음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부문에 대한 대응계획

	지표	개선방안
기 관 영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의견 수렴	인권경영 성과 확인 및 자문 시 전문가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념사업회 맞춤형 인권경영 정책 추진
	구제절차 접근·이용 용이성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가 필요하며,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념사업회 인권침해 구제절차(신고채널 등)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기념사업회 구제절차 외 다른 절차 이용 시 조력	인권경영 실행지침에 신고자가 기념사업회가 아닌 외부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활용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기념사업회는 관련 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종료하고, 필요할 시 해당 외부기관의 구제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항 추가
	협력업체 강제노동 금지 요구	협력업체와 계약 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또는 청렴계약서약서 등에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징구
	협력업체 강제노동 금지 관리	협력업체 대상 인권경영 매뉴얼 또는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협력업체 인권보호·존중 동참 요구	협력업체 각종 서약서 내 업무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존중 의무 이행 요구
	협력업체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협력업체 대상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협력업체 인권침해 시정 요구	인권경영 실행지침 개정 또는 확약서 활용하여 협력업체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기념사업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보안담당직원 인권보호 교육 이수	방문객 인권보호를 위하여 안내·경비 등 보안직원 대상 인권·보안교육 정기적 실시
주 요 사 업	교육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관리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동의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함을 명시
	교육현장 시설 점검	교육 준비 과정 중 교육현장의 시설 안전·위생 점검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사업 참여자 대상 인권 침해 신고·상담채널 안내	사업 관련 안내문 또는 필수서류 하단에 기념사업회 인권침해 신고제도 안내 문구 명시
	외래강사 자율성 존중 및 부당한 요구 금지	외래강사를 대상으로 강의내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부당한 요구·지시를 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약서 징구
	외래강사 고충처리제도	외래강사, 외부 협력업체 직원 등 업무 외부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안내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	업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202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권영향평가 결과(종합)

###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단위 : 개)

평가분야	평가항목	총계	점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4	4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5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5				
	[4] 인권경영성과	3	2	1			
	[5] 구제절차 마련	6	4	1	1		
② 고용상의 비차별	[6] 고용상 비차별	5	5				
	[7] 고용상 남녀비차별	6	6				
	[8]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3	3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4				
	[1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	4				
	[11]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5				
④ 강제 노동의 금지	[12] 강제노동 금지	5	5				
	[13] 협력업체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2			
⑤ 아동노동의 금지	[14] 연소자 고용 금지	2	2				
⑥ 산업안전 보장	[15] 근무지 안전	4	4				
	[16]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4				
	[17]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4	4				
	[18]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2	2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9] 협력업체 등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2	1		1		
	[20] 모니터링 실시	2			2		
	[2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1		1		
⑧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2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	1				
	[23]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3				
⑨ 환경권 보장	[24] 환경보호 노력	3	3				
	[25] 비상계획 수립	5	5				
⑩ 고객인권 보호	[26]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	4	4				
	[27] 고객정보 보호	6	6				
<b>합계</b>		<b>101</b>	<b>92</b>	<b>4</b>	<b>5</b>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단위 : 개)

평가분야	평가항목	총계	점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① 교육사업 참여자의 인권보호	[1] 교육 프로그램·포럼 계획	1	1				
	[2] 교육 프로그램·포럼 신청	5	5				
	[3] 교육 프로그램·포럼 참여자 정보 보호	3	2	1			
	[4] 교육 프로그램·포럼 운영	3	2	1			
	[5] 고충처리제도	2	1		1		
②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외부 담당자의 인권보호	[6] 외부 협력업체 직원 인권 보호	3	3				
	[7] 외래강사 인권 보호	4	3	1			
	[8] 고충처리제도	2	1		1		
③ 민주시민교육사업 업무 내부 담당자의 인권보호	[9] 원활한 업무수행	2	1	1			
	[10] 고충처리제도	2	2				
합계		27	21	4	2		